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 22조제2항)

- 1) 현재 채권자는 파산·해산, 폐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만 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우려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 불가
- 2)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 3) 이에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

나. 조기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22조제2항의 개정을 통해 조기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조치임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채권자는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상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의2 중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 (생략) <u><신설></u>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채권자는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 가정책상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 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 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기금 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0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채무 안정 <u>사모집합투자기구를</u> 말한 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3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 ----- ----- ----- ----- --- <u>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한 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 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을</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832